

『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
의견제시의 건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- 형곡2주공아파트의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당해 구역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
- 정비구역지정으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심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 및 면적

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적 (㎡)
신 설	구미형곡2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73번지 일원	20,902

다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○.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 별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 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 정	대 로	3	4	25	주간선 도 로	-	광로 2-2	대로 1-2	일반 도로	-	'77. 8.23	
변 경	대 로	3	4	28	주간선 도 로	-	광로 2-2	대로 1-2	일반 도로	-	-	구역내

○. 도시계획시설(공원·녹지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20	녹 지	완충녹지	대 로 3-4선변	9,720	-	9,720	87. 2. 7	

4. 참고사항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지역은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 단지로서 도시미관상 불량하며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·불량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, 도시 기능 회복,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였으므로 재건축은 타당하나 건축의 용적률을 적절히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도록 하고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 등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재건축에 따른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할 것임.